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남북이산가족생사확인및교류
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권영세 (통일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법령에서는 남북 이산가족 유전자 검사동의서 접수 및 검사대상물 채취는 대한적십자사에, 유전자 검사는 유전자검사기관 등에 분리하여 위탁하도록 하고 있으나, 전문성 있는 기관인 유전자검사기관 등에 일괄 위탁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.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

3) 행정규제

대통령령 제 호

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2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.

1. 남북 이산가족 유전자검사 동의서 접수, 검사대상물의 채취 및 유전자검사의 실시에 관한 업무: 국가기관 또는 「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에 따른 유전자검사기관 중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의2(유전자검사의 서면동의 등) ① ~ ③ (생 략) ④ 통일부장관은 법 제8조의2제5항에 따라 유전자검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위탁한다. 1. 남북 이산가족 유전자검사 동의서 접수 및 검사대상물의 채취에 관한 업무: 「대한적십자사 조직법」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2. 유전자검사의 실시에 관한 업무: 국가기관 또는 「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에 따른 유전자검사기관 중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3. (생 략) ⑤ (생 략)	제4조의2(유전자검사의 서면동의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 ----- -----. 1. 남북 이산가족 유전자검사 동의서 접수, 검사대상물의 채취 및 유전자검사의 실시에 관한 업무: 국가기관 또는 「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에 따른 유전자검사기관 중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<삭 제> 3. (현행과 같음) ⑤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통일부 이산가족과	
연 락 처	(02) 2100 - 5911